

공 보

제679호 2019. 1. 9.(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2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7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4

거창군 공고 제2019-1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

거창군 공고 제2019-19호 20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안) 7

거창군 공고 제2019-22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거창군 공고 제2019-32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1

거창군 공고 제2019-3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23

거창군 공고 제2019-34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24

거창군 공고 제2019-35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26

거창군 공고 제2019-3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7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호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32

회 감									
--------	--	--	--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351-35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18. 12. 27. ~ 2019. 1. 2.까지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9. 1. 3.

거 창 군 수

공고기간 : 2019. 1. 4. ~ 1. 9.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 고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정대은	2018.12.26.	51명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창군공무직지회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 군 행정과(서무담당)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9 - 1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3호('85.03.1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2019년 01월 07일

1.2.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76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76	42	8	278	대평리 566-4	대평리 595-1	경고43호('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58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58	37	8	336	대평리 565-4	대평리 566-4	경고43호('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60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60	84	8	771	대평리 566-4	대평리 564-5	경고43호('85.03.1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대평리 상아맨션(소로2-76호선 외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348	1,385					
1	대평리	595-1	도	3,690	43		(국)농림수산부			소로 2-76
2	대평리	565-4	대	249	235		거창군			소로 2-76
3	대평리	566-4	도	1,400	336		거창군			소로 2-58
4	대평리	565-5	답	490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5	대평리	564-5	도	266	2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6	대평리	1517	공	2,253	15		거창군			소로 2-60
---	-----	------	---	-------	----	--	-----	--	--	------------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20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 공고(안)**

거창군청에서는 20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 7.
거창군청 산림과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구분	인원	구분	계약기간		비고
도급조사원	3명	도급계약	2019. 1. 24.~3. 23. * '19.1.24.(목) 교육 참석	(약 60일)	※ 업무량 및 조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 ※ 교육참가비 66,800원 별도 지급 예정

- ※ “조사대상 임가수에 따라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 예비조사원은 도급조사원 결원 시 동일조건으로 우선 채용

□ 도급조사원 실적급 지급기준

- 조사원 등에 대한 도급금액(또는 임금)은 채용기간 중 조사표당 단가 및 조사대상 가구 수 등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
- 조사수당 지급

조사표	8,500원/ 1개 조사표당(조사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양호로 판단될 경우만 지급
전화비	조사대상 1가구당 356원 지급
교육수당	교육참석 1일에 66,800원 지급 ※ 교육 참석 시 소요되는 운임비 별도 지급

※ 불성실 조사표, 사용불가 조사표 지급기준은 도급계약서 참고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도급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물 품목별 생산임가 확인■ 조사기간 중 임산물 품목별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조사표는 재확인 및 수정보완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 자격요건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 체계의 통계조사 유경험자 우대
- ※ 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5. 심사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1. 14.(월)
- 면접일시 : 2019. 1. 14.(월) (필요에 따라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 15.(화)
 -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7.(월) ~ 1. 11.(금) / 5일간
-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접수방법 : 방문·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조)
- 도급조사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 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계약을 제한함

거창군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응시원서

응시분야	2018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사 진 (3cm x 4cm)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			
	주 소				
	e-mail				
최종학력	(학교, 대학원)		학과(졸업, 수료, 재학, 중퇴)		
경 력 사 항	구분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내용	
	채용 분야	~			
		~			
		~			
기타	~				
자 격 사 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채용 분야				
	기타				
취업지원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다자녀보육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주 1) 채용분야 『관련학과 전공』 및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채용공고를 참고하여 기재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 채용취소 및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지급보수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거창군수 귀중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거창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급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인사업무, 도급조사비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학력 및 자격사항, 가족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고관련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입사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이력서 등)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계약 종료된 경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삭제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미개최로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범위 삭제 / 안 제2조
 -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 / 안 제2조제6호
 -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안 제2조제7호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 안 제6조~제10조,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전화 : 055-940-8813
 - 팩스 : 055-940-8709
 - 이메일 : 2mk2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제12조를 제6조·제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제15조를 제8조·제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p>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p><삭 제></p> <p><삭 제></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p><삭 제></p> <p><삭 제></p>

<p>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교육과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삭 제></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삭 제></p>
<p>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삭 제></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제12조 (생략)</p>	<p>제6조~제7조 (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p>
<p>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4조~제15조 (생략)</p>	<p>제8조~제9조 (현행 제14조·제15조와 같음)</p>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333호, 2017.12.30.,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부칙 <제15333호, 2017. 12. 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18.10.02]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의결 등 활동내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 - 32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56호('92.12.3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57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0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57	155.0	6	1,182	송정리 445-6	송정리 524-1	경고456호('92.12.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운정마을(소로3-5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7,622	1,182					
1	거창읍 송정리	445-6	도	286	11	-	거창군			
2	거창읍 송정리	1061-33	구	297	9	-	국(농림수산부)			
3	거창읍 송정리	444	도	57	5	-	거창군			
4	거창읍 송정리	1601-35	구	908	334	-	국(농림수산부)			
5	거창읍 송정리	445-5	구	196	69	-	국(농림수산부)			

6	거창읍 송정리	528-35	답	855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7	거창읍 송정리	528-13	답	465	18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8	거창읍 송정리	445-3	답	1,128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3동 202호 (분당동, 셋별마을)	최*봉			
9	거창읍 송정리	528-12	답	1,172	86		거창군			
10	거창읍 송정리	521-8	대	79	45		거창군			
11	거창읍 송정리	528-10	답	506	161		거창군			
12	거창읍 송정리	528-9	답	1,024	161		거창군			
13	거창읍 송정리	521-2	답	67	67		거창군			
15	거창읍 송정리	522	답	284	16		거창군			
16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7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8	거창읍 송정리	524-1	답	60	4		거창군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52,960	52,920	40	5,296	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

2019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거창군수 및 거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수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15/100)	읍·면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계	52,954	7,944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4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거창읍	32,908		530	
주상면	1,501		226	
웅양면	1,826		274	
고제면	1,430		215	
북상면	1,500		225	
위천면	1,878		282	
마리면	1,905		286	
남상면	2,315		348	
남하면	1,385		208	
신원면	1,451		218	
가조면	3,515		528	
가북면	1,340		201	

▣ 군의회 의원

선거구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별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합 계		52,954	XXXX	XXXX	
가 선거구	거창읍 (상동 제외)	26,695	5,339	5,339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계	11,496	2,300	XXXX	
나 선거구	거창읍(상동)	6,213		115	
	북상면	1,500		115	
	위천면	1,878		115	
	마리면	1,905		115	
다 선거구	계	6,097	1,220	XXXX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주상면	1,501		61	
	웅양면	1,826		61	
	고제면	1,430		61	
	가북면	1,340		61	
라 선거구	계	8,666	1,734	XXXX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상면	2,315		87	
	남하면	1,385		87	
	신원면	1,451		87	
	가조면	3,515		87	

2019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		
52,954	52,920	34	1,059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19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 [별표4] 가 2016. 7. 21.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에 추가(안 제21조 제1항 2호 별표5)

종별		규격	처리비	
			현행	개정안
기타	폐소화기	3.3kg이하	-	3,000
		3.4kg이상		4,000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 10. ~ 2019. 1. 31.(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03

- FAX :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에 폐소화기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제21조 관련)

종별		규격	처리비	
			현행	개정안
기타	폐소화기	3.3kg이하 3.4kg이상	-	3,000
				4,000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9-00 폐소화기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9년 1월 14일(월)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1월 8일

거창군의회 의장 이 홍 희